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0
----------	-------

발의연월일 : 2025. 12. 1.

발 의 자 : 김승원 · 박선원 · 조계원
임호선 · 이성윤 · 김원이
권칠승 · 박수현 · 신장식
허영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함.

그러나 피해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지침을 통하여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

68조의5 신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소비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의 당사자인 소비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라. 65세 이상인 자
 - 마. 그 밖에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8조의5(소송지원) ①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소비자의 피해구제절차 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소비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의 당사자인 소비자</u> <u>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u> <u>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u> <u>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u>

	<u>에 따른 장애인</u> <u>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u> <u>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u> <u>구성원</u> <u>라. 65세 이상인 자</u> <u>마. 그 밖에 소송 지원이 필</u> <u>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u> <u>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u> <u>고시하는 자</u> <u>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에</u>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	---